

대구예술대학교 홈페이지 관리 규정

(제정 2007.12.06. 교무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홈페이지(이하 “학교홈페이지”라 한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학교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관리체계 및 역할) ① 학술정보원은 학교홈페이지 총괄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2. 학교홈페이지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3. 학교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4. 학교홈페이지 민원업무 처리부서 지정
5. 기타 학교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

② 전자계산소는 학교홈페이지 시스템관리부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2. 학교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백업, 보안 등 시스템 관리
3. 학교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

③ 각 기관 및 부서(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별로 홈페이지의 관련 업무는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의 등록, 삭제, 수정 등 콘텐츠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학교홈페이지 관리자) ① 학교홈페이지의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에 웹마스터를 두며,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 관리자를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학교홈페이지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부서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운영) ① 학교홈페이지의 콘텐츠는 각 기관에서 관장하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 각 기관은 학교홈페이지 등록 자료중 추가·수정·보완·삭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변경 요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학교홈페이지의 등록 자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기관에 대하여 수정, 보완 및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홈페이지 초기화면의 팝업창 및 배너설치는 입시 및 학교정책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제6조 (게시판 관리) ① 학교홈페이지의 게시판은 실명으로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분쟁이나 사이버 수사 관련 협조의뢰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관의 명칭이나 타인의 이름을 도용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의 책임하에 게시물을 삭제한다.

③ 게시판 민원사항 중 기관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소관기관의장의 이름으로 회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게시판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의 경우 사본을 별도 관리 보관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
3.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 특정물건에 대한 선전이나 비방의 내용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5. 욕설, 사실무근, 상대방 비방 등 불건전한 내용
6. 이미 삭제된 글에 대응하는 내용

제7조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①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홈페이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당연직위원인 학술정보원장과 교무위원회위원을 포함한 전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술정보원장이 되고 회무를 통할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운영기본계획
2. 학교홈페이지 관리규정의 개폐
3. 학교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